

定 款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 (이하“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커피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적인 커피산업의 표준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커피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커피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사단회~~ 저소득층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또한 커피를 주제로 한 행사기획 및 후원활동을 함으로써 커피 소비 시장이 한 단계 성숙된 문화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6-11에 둔다.
-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분사무소, 지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커피 산업의 표준화, 고도화, 안정화를 위한 사업모델 연구 개발 및 보급
 1. 개인 및 중소기업자를 위한 커피 관련 사업 창업 지원 및 교육
 1. 커피산업 종사자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지원
 1. 커피 전문가 육성 및 취업 지원 사업
 1. 커피 문화 발전을 위한 홍보, 행사 기획, 지원, 후원 사업
 1.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전시 행사 기획 및 지원사업(커피엑스포-코엑스 후원 행사, 장애인 올림픽 부대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커피 유료 케이터링 서비스 등)
 1. 바리스타 대회 기획 및 운영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정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각 위원회 등 본회의 상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커피산업 또는 관련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일반회원 : 본회의 설립취지를 지지하는 커피산업 또는 관련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종사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거나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업계 사업자, 종사자 또는 학계 관련자

제6조(회원의 자격)

- ①본회의 회원은 커피산업 또는 관련업계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종사자 및 종사예정자로서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공공기관, 단체)로 한다.
- ②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회원의 자격, 가입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본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 본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일반회원 : 일반회원은 바리스타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바리스타 특별위원회의 유지 발전을 위한 발언권을 가지며 바리스타 특별위원회 사업에 의한 모든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특별회원 : 정회원에게 준한다(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외).
4. 모든 회원은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정지 및 제명)

-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회원이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기간 동안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③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④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

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이사(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3인이상 15인이하
4. 감사 1인
5. 본회는 위 각 항의 임원 외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임기가 만료 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상임이사)

-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②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하는 일
 -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 ①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본회의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제1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3. 재적회원 5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간 내에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각 이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민법 제70조 제1항에 따름),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민법 제67조 제4호에 따름),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회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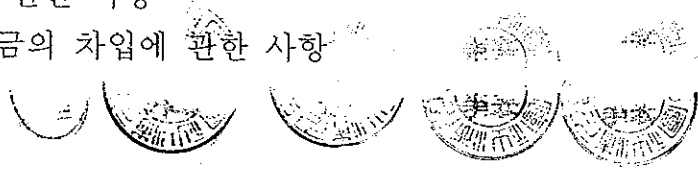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상임이사를 포함하여)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 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서면결의)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할 수 있다.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위원회

제29조(위원회의 종류)

본회는 본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①각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 ②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 자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재원)

- ①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제3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본회는 회계연도 1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②본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차입금)

본회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40조(본회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2조(수익분배의 금지)

본회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 이익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며, 배당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회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할 수 없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중

료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법령 등의 적용)

본 회의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민법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중 강행 규정에 반하는 사항은 민법 및 규칙을 적용한다.

제46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본회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들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